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이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9.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6.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17.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3. 시험실시기관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앞의 “제7장 한시조직”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20”를 “421”로, 일반직 계 “419”를 “42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19”를 “420”으로, 일반직 계 “418”을 “419”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20조의2, 별표1, 별표1의2, 별표6의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5]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인사관리국 성과평가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데이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 14. 삭제	
<u><신 설></u>	15. <u>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u><신 설></u>	16. <u>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u>
<u><신 설></u>	17. <u>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8. <u>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인재채용국) ① ~ ③ (생략)	제8조(인재채용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개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운영</u>	<u><삭 제></u>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⑤ ~ ⑦ (생 략) <u>제7장 한시조직</u> <u>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u>	<u>12.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u> <u>13. 시험실시기관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u> ⑤ ~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420</u>	<u>421</u>		+1	
일	반	•	•	•	•		
직	계	•	•	•	•		
			<u>419</u>	<u>420</u>		+1	
서	기	•	•	•	•		
관	또	•	•	•	•		
또	는						
과	학						
기	술						
서	기						
관							
			<u>16</u>	<u>17</u>		+1	
•			•	•	•		
•			•	•	•		
•			•	•	•		
•			•	•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19</u>		<u>420</u>	+1	
	.		.		.		
	.		.		.		
일반직 계			<u>418</u>		<u>419</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6</u>		<u>17</u>	+1	
	.		.		.		
	.		.		.		
	.		.		.		
	.		.		.		